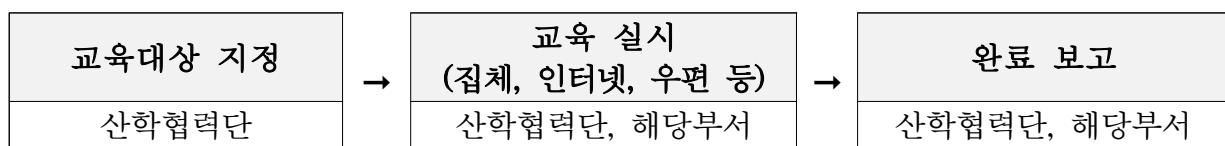


## 1. 업무개요

- 목적 : 근로자 스스로 유해,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
- 관련부서 :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등

## 2. 업무흐름도

### ■ 산업안전·보건교육



## 3. 주요내용

### ■ 안전보건관리책임자(단장) 교육

-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에는 제외되지만, 대학의 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기관장(총장)이 선임되며, 관계법령에 의거 신규·보수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
- 주요역할
  -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 -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 -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 -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  -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

### 정하는 사항

- 교육시간 : 신규교육(6시간), 보수교육(6시간)
- 교육방법 : 안전보건공단의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,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

### ■ 관리감독자 교육

- 현업근로자의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연간 16시간의 산업안전·보건 관련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서 이수
- 집체교육을 기본으로 하되, 교육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혹은 우편교육도 가능
-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, 부서 소속의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·보건교육을 자체 실시 가능
  - 지정현황 : 산학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연구지원팀장, 산학기획팀장

### ■ 근로자 안전·보건 교육

- 작업현장의 다양한 사고 및 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
- 정기교육(분기별 6시간), 신규 채용시(8시간, 일용근로자 1시간), 작업내용 변경시(2시간)의 교육을 실시
  -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시간의 50%가 면제

## 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### ■ 교육시간 관리 철저

-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정교육 이수시간을 철저히 관리 필요, 미 이수시 기관 과태료 납부
  - 채용(작업변경시)/정기교육/기초안전·보건교육 1인당 10만원
  - 유해위험작업(특별교육) 미실시 50만원
  -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50만원
  - MSDS 교육 미실시 50만원 등